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
2024. 12. 5.(목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 :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
노인복지증진에 기여

- 나.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노인복지증진 및 기금운용의 내실화
 -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지원,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

5.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말 조성액 ㉠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㉡=㉢+㉠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노 인 복 지 기 금	362,241	15,241	11,780	3,461	365,702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377,482	362,708	14,774
공공예금 이자	15,241	15,241	7,429
예치금 회수	362,241	347,467	7,429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377,482	362,708	14,774
노인복지기금 운영	11,780	11,780	0
예치금	365,702	350,928	14,774

6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임.

○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

이자수입 1천5백24만1천원

지출내역

사무관리비 197만원

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등 981만원

총 1,178만원.

- 2025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시설 위문,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등 사회참여 고취를 위한 지원 등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운용 수립 기준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「노인복지법」 [시행 2024. 11. 1.] [법률 제19814호, 2023. 10. 31., 타법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. <개정 2016.7.18>

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
<개정 2016.7.18>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<개정 2016.7.18>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의 수입금 <개정 2016.7.18>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
2.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
3. 전통문화 선양
4.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
5.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
6.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
7.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
8.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
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7.18>